

#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-8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 .6 .  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관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법 조항을 개정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자를 고발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의결사항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6조제2항제4호).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중 “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법 제8조제11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~3. (생략)</p> <p>4. <u>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</u> 해당되는 자의 고발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<u>법 제8조제12항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</u>-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